

영등포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11. 6.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 개정내용

- 「측량법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변경(안 제1조 중)
-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중)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로 변경(안 제3조제1항 중)

##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시행령 중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측량법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또한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규정에 자치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이를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정비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회무를 통리」 하며 를 「사무를 총괄」 하며 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1. 6.

보 고 자 : 권 오 운

# 관 계 법 령

## □ 측량법

**第58條 (地名委員會)** ①地名の 制定·變更 기타 地名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中央地名委員會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市·道地名委員會를,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市·郡·區地名委員會를 둔다.

<改正 1997.1.13, 2008.2.29>

②市·道地名委員會는 市·郡·區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地名을 審議·決定하여 中央地名委員會에 보고하며, 中央地名委員會는 市·道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이를 審議·決定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6.12.2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中央地名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地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④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中央地名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市·道地名委員會 및 市·郡·區地名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7.1.13>

## □ 측량법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9>

②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7.12.9>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7.1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7.12.9>